

『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등 6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1조)
- 소송비 지원 기준 등(안 별표 1, 별표 2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소송비용 지원의 적용범위를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고, 제5조~11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신중한 지원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음.
- 한편 의원의 소송비 지원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한하는 것이지 고의·과실 및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, 안 제4조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장이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별표 1 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은 민사소송, 형사소송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타 시군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임.
- 「지방자치법」이 지난 2022. 1. 13. 전면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면책특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 소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의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5. 참고사항

○ 타 지자체 제정 현황 (최초 : 경기도의회 2019. 10. 1.)

- 전국 32개 지자체 시행 * 전국 226개
 - 광역(2개) : 경기도, 전라북도
 - 기초(30개) : 경기도(8), 전남(5), 전북(4), 인천(4), 대구(1), 대전(1), 경북(1), 충남(1), 충북(1), 강원(1)
- 도내 : 성주군의회(2021. 11. 4.)

○ 타시군 지급기준 현황

- 경기도 고양시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본안사건 착수금 1/2이내	가.1,000만원이하:[1,000만원 ×10/100]이내 나.1,000~2,000만원:[100만원+(소송 목적의값-1,000만원)×10/100]이내 다.2,000~5,000만원:[200만원+(소송 목적의값-2,000만원)×8/100]이내 라.5,000~1억원:[440만원+(소송목적 의값-5,000만원)×6/100]이내 마.1억원을초과:1,000만원이내	본안사건 착수금 1/2이내	가.전부승소한것으로소송이최종확정된경우에만승소사 례금을지급 나.청구의포기·소취하의경우에는착수금의100분의50 이내지급 다만,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 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지급 X 다.소송사건이상급심에계류중인때에수임변호사가해당 사건의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던 라도 승소사례금 지급 X 라.변론없이종결된사건의경우에는승소사례금을지급X	가. 550만 원 이 내	가.인지대:실비 나.송달료:실비 다.검증비:실비 라.감정료:실비 마.증인여비:실비 바.그밖의비용:실 비

- 경기도 과천시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100만원	가. 5천만원 미만 : 250만원 나. 5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: 300만원 다. 1억원 이상 : 400만원	원심의 1/2 이내	가.승소사례금은전부승소시착수금에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하고, 일부승소(50%이상)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 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 나.소의취하,청구의포기·인낙의경우에는착수금의 100분의50이내지급 다.변론이없는신청사건및본안사건은지급X	가.개인단독사건:300만원 나.다수인관련사건:500만원 다.시차원의대응이필요한사 건:700만원	가.인지대:실비 나.송달료:실비 다.검증· 감정비:실비 라.출장여비 마.그밖의실비

• 경기도 광주시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본안사건 착수금 1/2이내	가.「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금액	본안사건 착수금 1/2이내	가.전부승소시:착수금의100% 나.60%이상승소시:전부승소시지급금액에 을을 곱한 금액 다.화해,인락,소취하등의경우:착수금의2분의1	가. 전액 지원	가.인지대:실비 나.송달료:실비 다.감정·검증료:실비 라.기타비용:실비

• 충북 충주시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 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	가.300만원이하:30만원 나.300~2,000만원:[30만원+(소송목적 의값-300만원)x] 다.2,000~5,000만원:[200만원+(소송목 적의값-2,000만원)x] 라.5,000~1억원:[440만원+(소송목적의 값-5,000만원)x] 마.1~1억5천만원:[740만원+(소송목적 의값-1억원)x] 바.1억5천만원~2억원:[940만원+(소송 목적의값-1억5천만원)x] 사.2억원~5억원:[1,040만원+(소송목적 의값-2억원)x] 아.5억원초과:[1,340만원+(소송목적의 값-5억원)x]		가. 착수금 의 2분의 1	가.300만원이하:30만원 나.300~2,000만원:[30만원+(소송목적의값-300만원)x] 다.2,000~5,000만원:[200만원+(소송목적의값-2,000만원)x] 라.5,000~1억원:[440만원+(소송목적의값-5,000만원)x] 마.1~1억5천만원:[740만원+(소송목적의값-1억원)x] 바.1억5천만원~2억원:[940만원+(소송목적의값-1억5천만 원)x] 사.2억원~5억원:[1,040만원+(소송목적의값-2억원)x] 아.5억원초과:[1,340만원+(소송목적의값-5억원)x]	

• 경남 진주시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100만원	가.5천만원미만:250만원 나.5,000~1억원:400만원 다.1억원이상:500만원	원심의 1/2 이내	가.승소사례금은전부승소시착수금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일부승소(50%이상)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 나.소의취하,청구의포기·인낙의경우에는착수금의100분 의50이내지급 다.변론이없는신청사건및본안사건은지급X	가.개인단독사 건:300만원 나.다수인관련사 건:500만원 다.시차원의대응 이필요한사 건:700만원	가.인지대:실비 나.송달료:실비 다.검증·감정비:실 비 라.출장여비 마.그밖의실비

• 전남 순천시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100만원	가.5천만원미만:250만원 나.5,000~1억원:300만원 다.1억원이상:400만원	원심의 1/2 이내	가.승소사례금은전부승소시착수금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일부승소(50%이상)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 나.화해의성립,인락,피고경정,소취하등의경우에는착수금 의반액지급 (조건부 취하는 지급 X) 다.변론이없는신청사건및본안사건은지급X	가.개인단독사 건:300만원 나.다수인관련사 건:500만원 다.시차원의대응 이필요한사 건:700만원	가.인지대:실비 나.송달료:실비 다.검증·감정비:실 비 라.출장여비 마.그밖의실비

• 전북 남원시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100만원	가.5천만원미만:250만원 나.5,000~1억원:300만원 다.1억원이상:400만원	원심의 1/2 이내	가.승소사례금은전부승소시착수금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일부승소(50%이상)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 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 나.소의취하,청구의포기(인낙)의경우에는착수금의100분 의50이내지급 다.변론이없는신청사건및본안사건은지급X	가.개인단독사 건:300만원 나.다수인관련사 건:500만원 다.시차원의대응 이필요한사 건:700만원	가.인지대:실비 나.송달료:실비 다.검증·감정비:실 비 라.출장여비 마.그밖의실비

• 경북 성주군

신청 사건	본안사건	환송심	승소사례금	형사 사건	그 밖의 비용
	가.2000만원미만: 2,000,000원 나.2천만원이상5천만원 미만:3,000,000원 다.5천만원이상1억원미 만:4,000,000원 라.1억원이상5억원미만: 6,000,000원 마.5억원이상10억원미만 :8,000,000원 바.10억원이상: 10,000,000원	본안사건 착수금 1/2 이내	가.최종심에서소송목적의값기준100분의60이상승소로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,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. -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 급사건 지급 안함.(다만,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.) 나.소의취하,청구의포기·인낙(화해권고결정,조정,조정에갈음 하는결정형식의경우도포함한다)의경우에는착수금의100분의5 0이내로한다.다만,변론이2회이하속행된경우에는사례금을지 급하지아니한다. 다.중재시에는착수금에경제적이익의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. 라.소송사건이상급심에계류중인때에수임변호사·변리사가해 당사건의소송대리틀스스로사임한경우에는하급심에서승소하 였더라도승소사례금은지급하지아니한다.		가.인지대:실비 나.송달료:실비 다.검증비:실비 라.감정료:실비 마.증인여비:「성주군지방 공무원여비 조례」중 가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.복사비등그밖의경비